

#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11. 17.

운영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안건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- 발의자: 임미연 의원 등 10명(이영빈, 이진환, 도하석, 박정환, 김해철, 장호섭, 김장관, 박종길, 고명욱)
- 발의일자: 2023. 11. 3.
- 회부일자: 2023. 11. 3.
- 상정 및 의결: 제300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(2023. 11. 17.)

## 2. 제안이유

- 국민권익위원회의 ‘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’ 및 제도개선 권고 사항에 따라 의원이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와 출석정지 시 의정활동비,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어 의정활동의 책임성 강화와 신뢰받는 의회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출석 정지 징계 시 의정활동비,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하도록 규정함. (안 제6조)

## 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: 「지방자치법」 제40조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33조
- 비용추계: 비대상

○ 입법예고(2023. 11. 3. ~ 11. 13.) 결과: 의견 없음

## 5. 전문위원 검토의견(전문위원 류순자)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비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제재기준이 미흡함에 따라 2022년 12월 1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“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” 을 마련하여 제도개선 권고를 하였는 바,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임.

○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6조제1항은 기존에 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 활동비와 여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였으나,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월정수당까지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, 안 제6조제2항에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,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은 규정을 신설하였음.
- 안 제6조제3항은 의원의 권리 회복을 위해 법원의 판결로 공소의 건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 이를 소급하여 지급하게 하는 규정을 두었음.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「지방자치법」에 저촉되는 등의 문제점은 없으며,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의원 스스로 윤리 의식을 높이고 책임성을 강화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달서구의회 구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6. 질의·답변 및 토론 요지: 특이사항 없음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